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1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. 03. 30.
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부칙 제2조 중 ‘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’를 ‘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’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부칙 제2조 중 ‘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’를 ‘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 절차’로 수정함(안 부칙 제2조).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‘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’를 ‘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 절차’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부칙 &lt; 7096호, 2019.3.28. &gt; 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제 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 해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부칙 &lt; 7096호, 2019.3.28. &gt; 제2조(시행기간) -----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제 <u>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</u> <u>정절차</u>----- -----.</p>	<p>부칙 &lt; 7096호, 2019.3.28. &gt; 제2조(시행기간) ----- ----- 제 <u>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</u> <u>수립·제출 절차</u>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7096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2025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‘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’를 ‘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 절차’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부칙 &lt; 제7096호, 2019.3.28. &gt;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<u>2022</u> <u>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</u> <u>사업계획 결정절차</u>를 이행한 사 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부칙 &lt; 제7096호, 2019.3.28. &gt;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시행기간) ----- <u>2025</u> <u>년 12월 31일---</u> <u>제7조에 따른</u> <u>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 절차--</u> -----.</p>